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0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문대림・김 윤・문금주

강득구 • 이병진 • 이원택

양문석 • 윤준병 • 임호선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수산 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 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70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	특례유형				존속기한		
21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	제15조	사용료등의	감면,	장기	사용허가등	2035.	12.	31.
	의2								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